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 송정빈 의원 외 17명
- 나. 의안번호 : 제510호
- 다. 발의일자 : 2019. 3. 28
- 라. 회부일자 : 2019. 3. 29

### 2. 제 안 사 유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수도권 3개 시·도 의견수렴 결과 환경부가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1일에서 1회/1개월로 변경('18.4.4)하도록 함에 따라 기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임.

### 3. 주 요 내 용

- 가.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1회/1일에서 1회/1개월로 함(안 제5조제3항)
- 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함(안 별지 제1호서식)

####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수도권 3개 시·도 의견수렴 결과 환경부가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일 1회에서 1개월 1회로 변경('18.4.4)하도록 3개 시·도에 요청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중 서울시 전 지역을 말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등록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미개조(교체)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가 해당됨.

#### 〈공해차량제한지역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비교〉

구 분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시 기	○ 상시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지 역	○ 서울시 전 지역	○ 서울시 전 지역
대 상	○ '05년 이전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량	○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 차량
처 분	○ 1차 경고(30일) ○ 2차 20만원(최대 200만원)	○ 경고 없이 과태료 10만원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단속<sup>1)</sup> 및 과태료 부과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1일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1회로 한정하고 있음.

1) 위반차량 단속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1개월 주기로 서울시에 통보하고 있으며, 51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 100대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 의견수렴 및 협의결과를 토대로 과태료<sup>2)</sup> 부과 기준(횡수)을 기존 1일 1회에서 1개월 1회로 완화하기로 하였고 환경부에서는 3개 시·도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18.4.4)한 바 있으며, 이에 인천시와 경기도는 2019년 1월 7일, 1월 14일 각각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음.

- 따라서 안 제5조제3항은 환경부 및 3개 시·도 협의결과에 따른 환경부의 조례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환경부 조례개정 요청사항을 반영<sup>3)</sup>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되는 해당 조례를 상당 기간 개정하지 않고 운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 기타 과태료 부과·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며, 관련 서식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음.

---

2) 매 위반시 마다 20만원을 부과하고 있고 해당 차량에 대해 최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조례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총액 변동은 없음),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과태료는 별도 부과되고 있음.

3)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1개월 간 위반횡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과태료 부과는 1회만 부과

## [관련법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지역"이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나. 수도권지역 중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대기관리권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5.12.31.>

####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지역구분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